

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7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5. 02. 이쌍자 의원 등 4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5. 16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5. 31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쌍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· 신체적 · 사회적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3) 금주구역의 지정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5)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(안 제6조)
- 6)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7) 군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8)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2호
 - 예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13.(월) [5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본 제정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함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과 추진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
 - 금주구역의 지정(안 제4조)
 - 도시공원, 어린이놀이시설, 청소년활동시설, 학교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
 -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교육 및 홍보(안 제5조)
 -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자원봉사자 활용·지원,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(안 제6조~제7조)
 -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-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·신문·방송 등에 대하여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고,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규정하였음

- 군민의 참여(안 제8조)

-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음.

-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안 제9조)

-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토록 규정하였음.
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군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,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수정가결

붙 임: 1. 수정안 제안서

2. 「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수정안

3. 수정안 대비표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「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776호 관련
------	-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	2024. 5. 31.
발 의 자	정영환 의원

1. 수정이유

-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「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-----.</p> <p><u>다만, 제9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